

대구지방법원 2022. 4. 19 선고 2021가단13675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2022. 4. 12.

판 결 선 고 2022. 4. 19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7. 9. 체결된 매매계약을 27,950,000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7,95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)

판사 성금석

별지